##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24. 9. 2.

총3면

www.nec.go.kr

공보과 02)3294-1000 ~ 1006

## 10. 16. 재·보궐선거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확정

= 후보자등록 9. 26.~27., 선거운동 10. 3.~15., 사전투표 10. 11.~12. =

2024. 10. 16.(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모두 5곳 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교육감선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에서 각각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9월 26일(목)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목)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금) ~ 12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재·보궐선거 확정 상황 1부.
  - 2.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1부.

## 2024. 10. 16.(수)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구 분	시 ·	도	관 할 위원회	선거구명	선거구역	실 시 대 <b>상 자</b> (소속정당)	사 유 사 유	<b>사유확정일</b> (사유발생일)	비고
교육감	서	明	서 울 시	서 울 시	서 울 특 별 시 일원	조 희 연	피선거권 상실	'24. 8. 29. ('24. 8. 29.)	보궐선거
기 초 단체장	부	산	금 정 구	금 정 구	금정구 일원	<b>김 재 윤</b> (국민의힘)	사 망	'24. 6. 26. ('24. 6. 25.)	보궐선거
	인	천	강 화 군	강 화 군	강화군 일원	<b>유 천 호</b> (국민의힘)	사 망	'24. 3. 10. ('24. 3. 9.)	보궐선거
	전	남	영 광 군	영 광 군	영광군 일원	<b>강 종 만</b> (무소속)	당선무효	'24. 5. 27. ('24. 5. 17.)	재선거
	전	납	곡성군	곡 성 군	곡성군 일원	<b>이 상 철</b> (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24. 6. 19. ('24. 5. 30.)	재선거

## 2024. 10. 16.(수) 실시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그 후 확정된	법 § 4, § 60의2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ਜੌ' <b>§</b> 2①②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된	규 § 51①②, 규 § 26의2③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때부터 10일)까지	11 8 20 420
'24.6. 18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 § 60의2①
7. 5.부터	금	<b>예비후보자등록 신청</b>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그 후 실시시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 § 60의2①
7. 18.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차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가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때부터 5일이내)까지	법 § 60②
8. 4.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그 후 실시사 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 § 60의2①
8. 17.부터 10. 16.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 § 86②
9. 16.까지	월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일까지	법 § 53②
9. 24.부터 9.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 § 37, 규 § 10 법 § 38, 규 § 11 법 § 65⑤
9. 26.부터 9. 27.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 § 49, 규 § 20
10. 2.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 § 642, 규 § 29
10. 3.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 § 33③
10. 4.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 § 65⑥, 규 § 30 ⑤
10. 4.7[7]	П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 § 642, 규 § 2925
10. 4.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 § 44①
10. 6.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 § 656, § 154① 5, 규 §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범 § 65億, § 153 ①, 규 § 76
10. 9.까지	수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7일까지	법 § 162② 규 § 3③
10. 11.부터 10. 12.까지	금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 § 155②, §158
10. 14.까지	월	투·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 § 161② 법 § 181②③
10. 16.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8시)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장 법 제11장
10. 28.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까지	법 § 122의2①, 민법 § 161 규 § 51의 3①
12. 15.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 § 122의2①, 규 § 51의3②